진본확인 미검증 정부진본확인센터

2018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내역 [건강보험료]

(조회기간 : 2018년 01 ~ 12월)

■ 가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나형동	810114-*******

■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내역 (단위:원)

월별	보수월액(고지금액)		소득월액(납부금액)	
	건강보험료①	장기요양보험료②	건강보험료③	장기요양보험료④
01월	163,810	12,080	0	0
02월	163,810	12,080	0	0
03월	163,810	12,080	0	0
04월	162,140	11,960	0	0
05월	162,140	11,960	0	0
06월	162,140	11,960	0	0
07월	168,680	12,440	0	0
08월	168,680	12,440	0	0
09월	168,680	12,440	0	0
10월	168,680	12,440	0	0
11월	168,680	12,440	0	0
12월	168,680	12,440	0	0
연말정산	49,790	3,270		
합계	2,039,720	150,030	0	0
총합계				2,189,750

1. 보수월액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한 금액이며,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대상금액은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입니다. (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에는 합산한 보험료가 제공됩니다.)
2. 소득월액 보험료 : 보수외소득 7,200만원 초과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이며, 연간 납부한 금액이 제공됩니다.

일련번호 : 20190115-51687336

국 세 청 National Tax Service

- 본 증명서류는『소득세법』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18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국민연금보험료]

(조회기간 : 2018년 01 ~ 12월)

■ 가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나형동	810114-*******

■ 국민연금보험료 내역 (단위:원)

월별	직장가입자 고지금액	지역가입자 등 납부금액
01월	202,050	0
02월	202,050	0
03월	202,050	0
04월	202,050	0
05월	202,050	0
06월	202,050	0
07월	210,600	0
08월	210,600	0
09월	210,600	0
10월	210,600	0
11월	210,600	0
12월	210,600	0
직장가입자 소급고지금액	0	
추납보험료 납부금액		0
실업크레딧 납부금액		0
합계	2,475,900	0
총합계		**2,475,900**

1. 직장가입자 고지금액 : 국민연금공단이 고지한 금액이며,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대상금액은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입니다. (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 합산한 보험료가 제공됩니다.)

※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근로자는 해당 지원금이 공제된 금액으로 월별 고지금액이 제공되며, 지원금 공제 시점에 따라 월별 고지금액이 마이너스(-)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2. 지역가입자 · 추납보험료 · 실업크레딧 납부금액은 연간 납부한 금액이 제공됩니다.
(지역가입자 등 납부금액은 12월에 납부 총액 표기)

일련번호 : 20190115-51687336

국 세 청
National Tax Service

- 본 증명서류는『소득세법』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18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보장성 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조회기간 : 2018년 01 ~ 12월)

■ 계약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나형동	810114-*******

■ 보장성보험(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납입내역 (단위:원)

종류	상 호 / 사업자번호 / 종피보험자1		보험종류 / 증권번호 / 종피보험자2		주피보험자 / 종피보험자3		납입금액 계
보장성	동양생명보험 (주)		(무)수호천사행복플랜II보험				1,252,728
	202-81-38***		25595490		810114-*******	나형동	
보장성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M-Basket1304생활케어프리				1,034,450
	116-81-03***		6055727111		810114-*******	나형동	
보장성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다이렉트개인용				488,020
	201-81-45***		220181994539000		810114-*******	나형동	
보장성	현대해상화재보험 (주)		무배당굿앤굿어린이CI보험(Hi140				440,640
	102-81-32***		L01419559787		150120-*******	나태양	
	840413-*******	임혜연					
인별합계금액							3,215,838

1. 공제 대상 :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
2. 공제 한도 : 100만원

일련번호 : 20190115-51687336

국 세 청
National Tax Service

- 본 증명서류는『소득세법』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18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보장성 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조회기간 : 2018년 01 ~ 12월)

■ 계약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임혜연	840413-*******

■ 보장성보험(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납입내역 (단위:원)

종류	상 호		보험종류				납입금액 계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보장성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무)HOW-MUCH하나로보험 (0710)				501,240
	104-81-30***		216520070002598		840413-*******	임혜연	
인별합계금액							501,240

1. 공제 대상 :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
2. 공제 한도 : 100만원

일련번호 : 20190115-51687336

국 세 청
National Tax Service

- 본 증명서류는『소득세법』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18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보장성 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조회기간 : 2018년 01 ~ 12월)

■ 계약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나문영	520809-*******

■ 보장성보험(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납입내역 (단위:원)

종류	상 호 / 사업자번호 / 종피보험자1	보험종류 / 증권번호 / 종피보험자2	주피보험자 / 종피보험자3		납입금액 계
보장성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무) NH프리미어운전자보험1704			784,002
	104-86-39***	3190347260113	520809-*******	나문영	
보장성	에이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무배당 Super 큰병이			510,528
	101-86-67***	41100316510001	520809-*******	나문영	
보장성	현대해상화재보험 (주)	하이카 업무용			581,590
	102-81-32***	M2018U89667500000	520809-*******	나문영	
인별합계금액					1,876,120

1. 공제 대상 :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
2. 공제 한도 : 100만원

일련번호 : 20190115-51687336

국 세 청
National Tax Service

- 본 증명서류는『소득세법』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18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보장성 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조회기간 : 2018년 01 ~ 12월)

■ 계약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강영숙	541014-*******

■ 보장성보험(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납입내역 (단위:원)

종류	상 호	보험종류			납입금액 계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보장성	동양생명보험 (주)	(무)수호천사실손의료비보장(갱			505,220
	202-81-38***	109002869	541014-*******	강영숙	
인별합계금액		505,220			

1. 공제 대상 :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
2. 공제 한도 : 100만원

일련번호 : 20190115-51687336

국 세 청
National Tax Service

• 본 증명서류는『소득세법』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18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의료비]

(조회기간 : 2018년 01 ~ 12월)

■ 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나형동	810114-*******

■ 의료비 지출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지출금액 계
8-92-21*	연********	일반	54,500
4-46-09*	은******	일반	3,300
의료비 인별합계금액			**57,800**
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			**0**
인별합계금액			**57,800**

1. 공제 대상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근로자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 사내근로복지기금,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지원금 등으로 지급한 의료비,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을 받는 경우 해당 의료비,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성형수술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포함)구입 비용은 세액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음
2. 공제 한도 : 본인・장애인・65세 이상 자・중증질환·희귀난치성질환·결핵으로 진단받아 본인부담 산정특례자로 등록한 자 · 난임시술비(한도없음), 그 외 부양가족(700만원)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50만원 이내

일련번호 : 20190115-51687336

국 세 청
National Tax Service

- 본 증명서류는『소득세법』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18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의료비]

(조회기간 : 2018년 01 ~ 12월)

■ 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나태양	150120-*******

■ 의료비 지출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지출금액 계
8-82-01*	서**********	일반	32,500
0-82-00*	연****	일반	23,200
0-92-41*	권********	일반	53,300
0-19-88*	리*******	일반	4,100
0-19-81*	올****	일반	48,510
0-91-36*	튼*******	일반	3,000
0-92-23*	삼**********	일반	3,400
0-82-02*	(********	일반	167,100
0-91-64*	오*******	일반	21,500
1-90-47*	한*********	일반	3,400
8-54-00*	미***	일반	1,400
2-19-00*	새***	일반	18,080
5-04-00*	조***	일반	1,200
의료비 인별합계금액			**380,690**

1. 공제 대상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근로자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 사내근로복지기금,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지원금 등으로 지급한 의료비,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을 받는 경우 해당 의료비,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성형수술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포함)구입 비용은 세액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음
2. 공제 한도 : 본인・장애인・65세 이상 자・중증질환·희귀난치성질환·결핵으로 진단받아 본인부담 산정특례자로 등록한 자 · 난임시술비(한도없음), 그 외 부양가족(700만원)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50만원 이내

일련번호 : 20190115-51687336

국 세 청
National Tax Service

• 본 증명서류는『소득세법』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18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의료비]

(조회기간 : 2018년 01 ~ 12월)

■ 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나태양	150120-*******

■ 의료비 지출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지출금액 계
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			0
인별합계금액			380,690

1. 공제 대상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근로자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 사내근로복지기금,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지원금 등으로 지급한 의료비,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을 받는 경우 해당 의료비,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성형수술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포함)구입 비용은 세액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음
2. 공제 한도 : 본인・장애인・65세 이상 자・중증질환·희귀난치성질환·결핵으로 진단받아 본인부담 산정특례자로 등록한 자 · 난임시술비(한도없음), 그 외 부양가족(700만원)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50만원 이내

일련번호 : 20190115-51687336

국 세 청
National Tax Service

• 본 증명서류는『소득세법』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18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의료비]

(조회기간 : 2018년 01 ~ 12월)

■ 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임혜연	840413-*******

■ 의료비 지출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지출금액 계
0-82-00*	연****	일반	1,785,410
0-92-41*	권********	일반	34,500
0-20-39*	은*****	일반	6,900
0-19-81*	올****	일반	4,500
0-92-54*	밝*********	일반	4,500
1-13-12*	세***	일반	55,810
8-92-21*	연********	일반	4,500
0-20-74*	원**	일반	3,850
8-32-13*	정****	일반	4,400
4-46-09*	은******	일반	7,300
1-42-00*	비****	일반	186,800
9-58-00*	명***	일반	19,900
3-93-31*	홍********	일반	20,300
5-93-00*	은*******	일반	4,500

1. 공제 대상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근로자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 사내근로복지기금,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지원금 등으로 지급한 의료비,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을 받는 경우 해당 의료비,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성형수술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포함)구입 비용은 세액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음
2. 공제 한도 : 본인・장애인・65세 이상 자・중증질환·희귀난치성질환·결핵으로 진단받아 본인부담 산정특례자로 등록한 자 · 난임시술비(한도없음), 그 외 부양가족(700만원)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50만원 이내

일련번호 : 20190115-51687336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 본 증명서류는『소득세법』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18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의료비]

(조회기간 : 2018년 01 ~ 12월)

■ 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임혜연	840413-*******

■ 의료비 지출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지출금액 계
의료비 인별합계금액			2,143,170
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			0
인별합계금액			2,143,170

1. 공제 대상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근로자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 사내근로복지기금,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지원금 등으로 지급한 의료비,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을 받는 경우 해당 의료비,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성형수술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포함)구입 비용은 세액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음
2. 공제 한도 : 본인・장애인・65세 이상 자・중증질환·희귀난치성질환·결핵으로 진단받아 본인부담 산정특례자로 등록한 자 · 난임시술비(한도없음), 그 외 부양가족(700만원)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50만원 이내

일련번호 : 20190115-51687336

국 세 청
National Tax Service

• 본 증명서류는『소득세법』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18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의료비]

(조회기간 : 2018년 01 ~ 12월)

■ 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나문영	520809-*******

■ 의료비 지출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지출금액 계
0-19-15*	혜***	일반	5,800
1-96-02*	정******	일반	9,800
9-04-48*	초***	일반	48,600
0-83-02*	성*****	일반	1,100
0-90-14*	대***	일반	51,500
2-48-16*	우***	일반	2,000
3-90-73*	가*****	일반	50,500
0-90-42*	서*****	일반	29,500
4-91-34*	전**********	일반	198,400
5-90-45*	삼********	일반	1,500
0-96-02*	안***	일반	6,300
8-19-46*	세***	일반	15,650
0-90-38*	정*****	일반	131,000
4-96-06*	이******	일반	1,800

1. 공제 대상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근로자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 사내근로복지기금,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지원금 등으로 지급한 의료비,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을 받는 경우 해당 의료비,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성형수술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포함)구입 비용은 세액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음
2. 공제 한도 : 본인・장애인・65세 이상 자・중증질환·희귀난치성질환·결핵으로 진단받아 본인부담 산정특례자로 등록한 자 · 난임시술비(한도없음), 그 외 부양가족(700만원)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50만원 이내

일련번호 : 20190115-51687336

국 세 청
National Tax Service

• 본 증명서류는『소득세법』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18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의료비]

(조회기간 : 2018년 01 ~ 12월)

■ 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나문영	520809-*******

■ 의료비 지출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지출금액 계
0-90-48*	가**********	일반	4,500
3-06-19*	행***	일반	4,300
4-82-08*	의**********	일반	6,100
4-05-46*	삼******	일반	1,000
3-90-93*	사**********	일반	35,600
0-96-02*	덕***	일반	6,000
0-90-34*	대****	일반	2,400
3-96-04*	초*****	일반	16,100
2-96-06*	성****	일반	303,600
3-28-00*	손***	일반	25,200
3-62-00*	사***	일반	70,000
6-26-00*	평***	일반	1,000
9-91-00*	성**********	일반	14,800
의료비 인별합계금액			**1,044,050**

1. 공제 대상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근로자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 사내근로복지기금,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지원금 등으로 지급한 의료비,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을 받는 경우 해당 의료비,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성형수술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포함)구입 비용은 세액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음
2. 공제 한도 : 본인・장애인・65세 이상 자・중증질환·희귀난치성질환·결핵으로 진단받아 본인부담 산정특례자로 등록한 자 · 난임시술비(한도없음), 그 외 부양가족(700만원)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50만원 이내

일련번호 : 20190115-51687336

국 세 청
National Tax Service

• 본 증명서류는『소득세법』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18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의료비]

(조회기간 : 2018년 01 ~ 12월)

■ 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나문영	520809-*******

■ 의료비 지출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지출금액 계
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			0
인별합계금액			1,044,050

1. 공제 대상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근로자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 사내근로복지기금,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지원금 등으로 지급한 의료비,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을 받는 경우 해당 의료비,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성형수술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포함)구입 비용은 세액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음
2. 공제 한도 : 본인・장애인・65세 이상 자・중증질환·희귀난치성질환·결핵으로 진단받아 본인부담 산정특례자로 등록한 자 · 난임시술비(한도없음), 그 외 부양가족(700만원)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50만원 이내

일련번호 : 20190115-51687336

국 세 청
National Tax Service

• 본 증명서류는『소득세법』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18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의료비]

(조회기간 : 2018년 01 ~ 12월)

■ 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강영숙	541014-*******

■ 의료비 지출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지출금액 계
4-91-53*	튼*********	일반	21,100
9-04-48*	초***	일반	47,700
0-90-14*	대***	일반	54,500
2-48-16*	우***	일반	2,200
3-90-73*	가*****	일반	37,600
0-90-42*	서*****	일반	49,900
4-22-35*	죽*****	일반	7,560
8-19-46*	세***	일반	2,900
3-06-19*	행***	일반	5,700
3-90-93*	사**********	일반	61,600
0-96-02*	덕***	일반	5,100
3-96-04*	초*****	일반	21,500
2-96-06*	성****	일반	313,400
6-26-00*	평***	일반	4,700

1. 공제 대상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근로자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 사내근로복지기금,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지원금 등으로 지급한 의료비,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을 받는 경우 해당 의료비,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성형수술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포함)구입 비용은 세액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음
2. 공제 한도 : 본인・장애인・65세 이상 자・중증질환·희귀난치성질환·결핵으로 진단받아 본인부담 산정특례자로 등록한 자 · 난임시술비(한도없음), 그 외 부양가족(700만원)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50만원 이내

일련번호 : 20190115-51687336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 본 증명서류는『소득세법』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18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의료비]

(조회기간 : 2018년 01 ~ 12월)

■ 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강영숙	541014-*******

■ 의료비 지출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지출금액 계
의료비 인별합계금액			635,460
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			0
인별합계금액			635,460

1. 공제 대상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근로자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 사내근로복지기금,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지원금 등으로 지급한 의료비,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을 받는 경우 해당 의료비,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성형수술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포함)구입 비용은 세액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음
2. 공제 한도 : 본인・장애인・65세 이상 자・중증질환·희귀난치성질환·결핵으로 진단받아 본인부담 산정특례자로 등록한 자 · 난임시술비(한도없음), 그 외 부양가족(700만원)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50만원 이내

일련번호 : 20190115-51687336

국 세 청
National Tax Service

• 본 증명서류는『소득세법』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18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교육비]

(조회기간 : 2018년 01 ~ 12월)

■ 학생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나태양	150120-*******

■ 교육비 지출내역 (단위:원)

교육비구분	학교명	사업자번호	구분	지출금액계
보육시설	***보육시설	**0-80-04***	일반교육비	16,000
보육시설	***보육시설	**0-80-06***	일반교육비	475,000
일반교육비 합계금액				**491,000**
현장학습비 합계금액				**0**

1. 아이행복(사랑)카드 : 아이행복(사랑)카드를 이용하여 지급한 보육료 중 부모부담금액(정부지원금 제외)이며, 추가로 지급한 보육료가 있는 경우 해당 보육시설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제 가능합니다.
2. 대학(원)교육비 : 등록금 등 교육비에서 학자금대출과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제공합니다.

※ 2017년 귀속부터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학자금 대출 중 등록금 대출에 한함)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며, 대출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는 연도에 원금과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공제 한도 : 근로자 본인·장애인특수교육비(전액), 취학전 아동·초·중·고등학생(연 300만원), 대학생(연 900만원), 교복구입비용(중·고등학생 1명당 연50만원), 현장학습비(초·중·고등학생 1명당 연 30만원)

일련번호 : 20190115-51687336

국 세 청
National Tax Service

• 본 증명서류는『소득세법』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18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사용처별)내역 [신용카드]

(조회기간 : 2018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나형동	810114-*******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일반	전통시장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비이용분	합계금액
5,408,148	0	644,750	0	6,052,898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신용카드	120-81-54***	롯데카드 주식회사	일반	22,100
신용카드	214-81-37***	비씨카드 (주)	일반	1,727,366
신용카드	202-81-48***	신한카드 주식회사	일반	705,225
신용카드	202-81-48***	신한카드 주식회사	대중교통	2,350
신용카드	102-81-14***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일반	22,584
신용카드	104-86-56***	하나카드 주식회사	일반	800
신용카드	213-86-15***	현대카드주식회사	일반	135,360
신용카드	101-86-61***	(주) KB국민카드	일반	2,794,713
신용카드	101-86-61***	(주) KB국민카드	대중교통	642,400
인별합계금액				6,052,898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190115-51687336

국 세 청
National Tax Service

- 본 증명서류는『소득세법』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18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사용처별)내역 [신용카드]

(조회기간 : 2018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임혜연	840413-*******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일반	전통시장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비이용분	합계금액
5,438,987	0	54,800	0	5,493,787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신용카드	202-81-48***	신한카드 주식회사	일반	5,438,987
신용카드	202-81-48***	신한카드 주식회사	대중교통	54,800
인별합계금액				5,493,787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190115-51687336

국 세 청
National Tax Service

- 본 증명서류는『소득세법』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18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사용처별)내역 [신용카드]

(조회기간 : 2018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나문영	520809-*******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일반	전통시장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비이용분	합계금액
7,889,630	0	0	0	7,889,630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신용카드	104-86-39***	농협은행 주식회사	일반	2,174,150
신용카드	213-86-15***	현대카드주식회사	일반	5,715,480
인별합계금액				7,889,630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190115-51687336

국 세 청
National Tax Service

- 본 증명서류는『소득세법』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18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사용처별)내역 [신용카드]

(조회기간 : 2018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강영숙	541014-*******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일반	전통시장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비이용분	합계금액
881,410	0	0	0	881,410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신용카드	104-86-39***	농협은행 주식회사	일반	881,410
인별합계금액				881,410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190115-51687336

국 세 청
National Tax Service

- 본 증명서류는『소득세법』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18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사용처별)내역 [직불카드]

(조회기간 : 2018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나형동	810114-*******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일반	전통시장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비이용분	합계금액
7,072,723	41,720	16,000	0	7,130,443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직불카드	120-81-54***	롯데카드 주식회사	일반	630,195
직불카드	214-81-37***	비씨카드 (주)	일반	1,025,078
직불카드	202-81-45***	삼성카드주식회사	일반	262,140
직불카드	202-81-48***	신한카드 주식회사	일반	132,310
직불카드	563-81-00***	엔에이치엔페이코 주식회사	일반	790,623
직불카드	116-81-34***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일반	2,534,857
직불카드	116-81-34***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전통시장	41,720
직불카드	116-81-34***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대중교통	16,000
직불카드	104-86-56***	하나카드 주식회사	일반	10,400
직불카드	101-82-03***	한국산업은행	일반	581,679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190115-51687336

국 세 청
National Tax Service

- 본 증명서류는『소득세법』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18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사용처별)내역 [직불카드]

(조회기간 : 2018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나형동	810114-*******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직불카드	213-86-15***	현대카드주식회사	일반	7,400
직불카드	101-86-61***	(주) KB국민카드	일반	1,098,041
인별합계금액				**7,130,443**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190115-51687336

국 세 청
National Tax Service

- 본 증명서류는『소득세법』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18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사용처별)내역 [직불카드]

(조회기간 : 2018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임혜연	840413-*******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일반	전통시장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비이용분	합계금액
7,672,225	177,890	124,200	0	7,974,315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직불카드	116-81-34***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일반	2,146,836
직불카드	116-81-34***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전통시장	117,630
직불카드	101-82-03***	한국산업은행	일반	1,814,475
직불카드	101-82-03***	한국산업은행	전통시장	30,960
직불카드	375-88-00***	한국카카오은행(주)	일반	1,082,810
직불카드	101-86-61***	(주) KB국민카드	일반	2,628,104
직불카드	101-86-61***	(주) KB국민카드	전통시장	29,300
직불카드	101-86-61***	(주) KB국민카드	대중교통	124,200
인별합계금액				7,974,315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190115-51687336

국 세 청
National Tax Service

- 본 증명서류는『소득세법』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18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사용처별)내역 [직불카드]

(조회기간 : 2018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나문영	520809-*******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일반	전통시장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비이용분	합계금액
2,129,300	0	0	0	2,129,300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직불카드	214-81-37***	비씨카드 (주)	일반	2,129,300
인별합계금액				2,129,300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190115-51687336

국 세 청
National Tax Service

- 본 증명서류는『소득세법』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18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현금영수증]

(조회기간 : 2018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나형동	810114-*******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일반	전통시장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비이용분	합계금액
22,580,123	0	0	12,600	22,592,723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종류	월별 공제대상금액				공제대상금액
		01월	02월	03월	04월	
		05월	06월	07월	08월	
		09월	10월	11월	12월	
현금영수증	일반거래	190,405	1,199,570	819,156	8,820,059	22,580,123
		608,551	546,819	770,210	1,490,046	
		629,067	687,213	645,800	6,173,227	
현금영수증	도서.공연비거래	0	0	0	0	12,600
		0	0	0	0	
		0	0	0	12,600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홈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 신고하기」) 또는 세무서(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에 신청

일련번호 : 20190115-51687336

국 세 청
National Tax Service

- 본 증명서류는『소득세법』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18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현금영수증]

(조회기간 : 2018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임혜연	840413-*******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일반	전통시장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비이용분	합계금액
429,700	0	0	0	429,700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종류	월별 공제대상금액				공제대상금액
		01월	02월	03월	04월	
		05월	06월	07월	08월	
		09월	10월	11월	12월	
현금영수증	일반거래	0	0	0	0	429,700
		0	0	0	0	
		429,700	0	0	0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홈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 신고하기」) 또는 세무서(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에 신청

일련번호 : 20190115-51687336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 본 증명서류는『소득세법』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18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현금영수증]

(조회기간 : 2018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나문영	520809-*******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일반	전통시장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비이용분	합계금액
15,650	0	0	0	15,650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종류	월별 공제대상금액				공제대상금액
		01월	02월	03월	04월	
		05월	06월	07월	08월	
		09월	10월	11월	12월	
현금영수증	일반거래	5,150	0	0	0	15,650
		0	0	0	0	
		2,100	8,400	0	0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홈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 신고하기」) 또는 세무서(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에 신청

일련번호 : 20190115-51687336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 본 증명서류는『소득세법』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18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현금영수증]

(조회기간 : 2018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강영숙	541014-*******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일반	전통시장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비이용분	합계금액
2,900	0	0	0	2,900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종류	월별 공제대상금액				공제대상금액
		01월	02월	03월	04월	
		05월	06월	07월	08월	
		09월	10월	11월	12월	
현금영수증	일반거래	0	0	0	0	2,900
		0	0	0	0	
		0	2,900	0	0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홈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 신고하기」) 또는 세무서(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에 신청

일련번호 : 20190115-51687336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 본 증명서류는『소득세법』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18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내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조회기간 : 2018년 01 ~ 12월)

■ 차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나형동	810114-*******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내역 (단위:원)

취급기관 (사업자번호)	대출종류 (상품명)	최초차입일 최종상환예정일	상환 기간	주택 취득일	저당권 설정일	연간합계액	소득공제 대상액
		차입금	고정금리 차입금	비거치식 상환차입금	당해년 원금상환액		
한국주택금융공사 (104-81-86***)	해당없음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2018-04-13 2033-04-13	15년	2018-03-29	2018-04-13	814,500	814,5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12,705,968		

1. 공제 대상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2013.12.31. 이전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도시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 주택소유자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하며, 본인 명의 차입금이 공제대상임

2. 공제한도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와 합하여 차입연도, 상환기간 및 상환종류 등에 따라 연 300만원, 5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1800만원 한도

일련번호 : 20190115-51687336

국 세 청
National Tax Service

- 본 증명서류는『소득세법』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18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내역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조회기간 : 2018년 01 ~ 12월)

■ 차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나형동	810114-*******

■ 주택임차차입금 상환내역 (단위:원)

취급기관	사업자번호	대출계좌번호	대출일	상환액 계
(주) 국민은행	201-81-68***	41432901003758	2016-04-15	13,435,800
합 계				**13,435,800**

1. 공제대상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인 근로자
※ 임대차계약증서는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세대주, 세대원) 명의여야 함
2. 공제대상금액 :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의 40%
※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요건은 연말정산간소화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190115-51687336

국 세 청
National Tax Service

- 본 증명서류는『소득세법』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18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취급기관별)내역 [주택마련저축]

(조회기간 : 2018년 01 ~ 12월)

■ 계약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나형동	810114-*******

■ 주택마련저축 납입내역 (단위:원)

취급기관 (사업자번호)	계좌번호	저축구분	저축명	가입일자	납입금액 계
(주) 우리은행 (201-81-02***)	1073408358664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2014-04-04	240,000
합 계					**240,000**

1. 공제대상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청약저축, 주택청약저축은 240만원 한도,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은 월 납입액 15만원 이하)의 40%(세대주가 아닌 경우 공제대상 아님)

※ 2014.12.31.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2018년 납입분부터 공제대상 아님

※ '09.12.31. 이전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청약저축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입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도 공제 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 공제 가능

※ 연도 중에 중도 해지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단, 주택 당첨으로 인하여 해지된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공제 가능

2. 공제한도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

일련번호 : 20190115-51687336

국 세 청
National Tax Service

- 본 증명서류는『소득세법』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18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내역
[연금저축]

(조회기간 : 2018년 01~12월)

■ 가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나형동	810114-*******

■ 연금저축 납입내역 (단위:원)

상호	사업자번호	당해연도 납입금액	당해연도 납입액 중 인출금액	순납입금액
계좌번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	202-81-45***	2,400,000	0	2,400,000
51201541450000				
순납입금액 합계				**2,400,000**

※ 연금계좌(연금저축, 퇴직연금) 납입액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납입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므로 조회기간을 선택하여 조회한 경우에도 1년 전체 납입액이 조회됩니다.
1. 연금저축(2001.1.1. 이후 가입) : 근로자(사업소득자)가 가입한 연금저축의 연간 불입액 공제
2. 세액공제 대상금액 : 납입액(전환 신청 금액 포함)에서 인출액을 제외한 순납입액 합계
3. 공제 한도 :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순납입액을 합하여 연 700만원 한도(연금저축계좌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억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자 400만원, 초과자는 300만원을 한도로 함)
4. 연금저축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 금융기관에서 연간 납입액을 제출합니다.

일련번호 : 20190115-51687336

국 세 청
National Tax Service

• 본 증명서류는『소득세법』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